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부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난 10월 25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 포장유통 대상을 닭고기, 오리고기 1일 도축수 5만 이상 도축업 영업자로 확대하고, 축산물을 스스로 가공하거나 포장처리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고 있는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포장유통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3)

(1) 축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재오염 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해 닭·오리고기 1일 도축수 8만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2007년 1월부터 포장유통을 시행하고 있음.

(2)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단계별 확대 계획

에 따라 1일 도축수 5만 이상 도축업 영업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정함.

(3)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영업의 종류에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형태가 없어 각 유통업체에서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이 영업신고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음.

(2) 유통업체가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유통과정에 있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대상 확대,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 중 공동시설의 설치 생략, 도축장 실명제 도입, 수입 축산물정밀검사 대상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대상 확대 관련 사항(안 제27조제2항)

(1)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은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역원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경제정책조정회의(2007. 2. 16) 시 부처 법령의 시험·검사기관 지정대상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대상에 국제공인인 정기구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축산물위생검사 결과의 국제적 통용이 기대됨.

나. 도축장 실명제 도입에 관한 사항(별표 13)

(1) 소비자 등이 육류구매시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도축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도축장 명칭 및 도축일자를 표시하도록 함.

(3) 소비자 등이 육류구매시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한 축산물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도축장 위생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별표 7)

(1)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축산물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2) 허위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로 수입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 중 공동시설의 설치생략에 관한 사항(별표 10)

(1) 일반 음식점영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함.

(2) 일반 음식점영업자가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공동사용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공동사용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규제완화 및 법령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등(안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60조, 별표 1, 10, 12, 13)


(1) 규제 완화 및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일부 사항 보완

(2) 규제완화 차원에서 축산물운반업의 시설기준 중 영업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할 때 용도를 미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함.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하였고, 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시 정부 수입인지, 수입증지 외에 전자화폐·전자결제로도 가능하도록 함.

위생교육 실시 결과를 1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오리도축 시 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처

리제는 식품첨가물 등 식품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일부 규제 완화로 영업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오리 도축시 털 제거제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 관리 수준의 향상이 기대됨.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 장관(참조 : 축산물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개정 시행령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고 개정안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과(전화 02-500-19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연간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이상인 자”를 “연간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이상인 자”로 한다.

제21조제6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을 스스로 가공 또는 포장처리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부 칙 -

- ①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1일 평균 도축수의 산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연간 도축일수는 250일로 한다.